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82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이수진・이기헌・신정훈

송옥주 · 민형배 · 추미애

민병덕 · 김정호 · 김성환

박선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 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 음.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내 예방차원의 보건관리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 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 제3호 삭제).

법률 제 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	
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	
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	
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	
용한 것으로 본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u><삭 제></u>
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	
는 보건관리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